

#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9-42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· 운영, 활용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-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~제13조)
- 실무협의회, 시민협의체,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~제16조)

## 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\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3】

## 사전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3. 11. ~ 3. 31.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## 【붙임 1】

### 안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 따른다.

**제3조(스마트도시계획 수립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 
② 스마트도시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
③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안산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통합운영센터의 설치)**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·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산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· 운영이 쉽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· 호환성 · 안전성 · 효율성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센터의 기능)**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
  2. 스마트도시 정보수집, 가공처리, 서비스 제공
  3.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,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·운영
  4.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
  5.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·운영
-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,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·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)**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)**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보안관리 및 정보보호)**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.

- ②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**제9조(개인정보의 보호)**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으면 저장·보관할 수 없다.

**제10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)**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4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1조(협의회의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
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
2. 사업시행자

3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

4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
5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
6.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13조(협의회 운영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실무협의회 운영)**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·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15조(시민협의체 운영)**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16조(자문단 운영)**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  
②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 
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시민참여 확대 등)**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및 기획행사,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

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연구·개발 등)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·지원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이전·보급
2.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·개발
3.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전략사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전략사업과장 윤 풍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스마트도시팀장 이 혁
	담당자 성명·전화	송연숙 (행정 1963)